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520호

**등촌동 515-44 일대 및 등촌동 520-3 일대
모아타운 관리계획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-44 일대 및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주택사업(소규모정비사업) 시행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서울특별시
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등촌동 515-44 일대,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
구분	관리지역 명칭	위치	관리계획 요건	노후·불량건축물	비고
기준	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등촌동 515-44 일대	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	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	
현황			65,498.6㎡	전체 : 180동 노후불량 : 122동(67.8%)	
기준	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등촌동 520-3 일대	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	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1이상일 것	
현황			64,171.6㎡	전체 : 99동 노후불량 : 54동(54.5%)	
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
가. 관리지역의 지정

○ 관리지역 지정 조서

구분	관리지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등촌동 515-44 일대	-	증 65,498.6	65,498.6	
신규	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등촌동 520-3 일대	-	증 64,171.6	64,171.6	

나. 토지이용계획(안)

○ 모아타운 I

구 분	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	
합 계				65,498.6	100.0		
시행 구역	공동주 택 용지	소 계		56,167.6	85.8		
		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	1	사업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7,666.1	27.0	
			2	사업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2,699.6	19.4	어린이집 면적포함
			3	사업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8,738.0	28.6	
			4	사업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7,063.9	10.8	
정비기반시설 등		소 계		9,331.0	14.2		
		도로		6,677.6	10.2		
		어린이공원		2,411.4	3.7		
		어린이집		242.0	0.4	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※ 사업시행시 어린이집 이전 위치 변경 가능함

○ 모아타운 II

구 분	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	
합 계				64,171.6	100.0		
시행 구역	공동주 택 용지	소 계		23,646.3	36.8		
		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	1	사업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9,324.7	14.5	
			2	사업가능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4,321.6	22.3	
정비기반시설 등		소 계		38,586.7	60.1		
		도로		5,633.2	8.6		
		(입체적결정 도로)		(771.3)	-		
		강서도서관 앞 도로		104.5	0.2		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	학교	32,953.5	51.4	
시행구역 외	소계	1,938.6	3.0	
	강서구의회	존치구역	1,938.6	3.0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※ 강서구도서관 앞 도로는 모아주택Ⅱ-1구역에서 사업시행 시 확보토록 함

다. 정비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○ 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I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합계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3	가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3	가	6~10 (4)	국지	350 (227)	등촌동 612-7	등촌동 513-1	일반		
기정	소로	3	마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1	마	8	국지	154	등촌동 516-3	등촌동 516-12	일반		
기정	소로	3	아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2	아	8	국지	131	등촌동 17-29	등촌동 516-12	일반		
기정	소로	2	타	8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1	타	10~15	국지	245	등촌동 519-2	등촌동 518-29	일반		
기정	소로	3	파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3	파	6	국지	52	등촌동 518-9	등촌동 518-29	보행자 전용		
신설	소로	3	러	6	국지	115	등촌동 514-43	등촌동 515-39	일반		
폐지	소로	3	사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폐지	소로	3	카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폐지	소로	3	하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
※ 향후 모아타운 외 등촌로39길(소로3-가)변 개발 시 간선도로인 '등촌로' 진출입로 확폭할 수 있도록 계획 유도함

※ ()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폭원 및 연장임

■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소로3-가	소로3-가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6m → 6~10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마	소로1-마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6m → 8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아	소로2-아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6m → 8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2-타	소로1-타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8m → 10~15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파	소로3-파	노선번호 부여	누락된 노선번호 부여
-	소로3-러	신설	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
소로3-사	-	폐지	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
소로3-카	-	폐지	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
소로3-하	-	폐지	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

■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공원	어린이 공원	등촌동 517-1	853.9	증)57.1	911	서울특별시 제1995-141호 (1995.05.20)	능안공원
신설	-	공원	어린이 공원	등촌동 519-2	-	증)1,500	1,500	-	

※ 공원 조성 시 모아타운 내 보행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변으로 보도를 확보토록 함

－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-	공원	선형 및 면적 변경 (A=853.9㎡ → 911㎡, 증 57.1㎡)	도로 확폭에 따른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
-	공원	공원 신설	세대수 증가를 고려한 공원 신설

－ 이하여백 －

○ 등촌동 520-3 일대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합계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3	가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3	가	6~10 (6)	국지	350 (227)	등촌동 612-7	등촌동 513-1	일반		
기정	소로	3	다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3	다	6~8	국지	150 (59)	등촌동 612-12	등촌동 524-4	일반		
기정	소로	3	라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2	라	8	국지	36	등촌동 523-29	등촌동 523-35	일반		
기정	소로	3	자	4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2	자	8~15	국지	160	등촌동 521-4	등촌동 523-1	일반		
기정	소로	2	차	8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1	차	10	국지	125	등촌동 521-2	등촌동 521-22	일반		
기정	소로	3	너	4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2	너	8~11	국지	55	등촌동 520-6	등촌동 521-4	일반		
기정	소로	2	더	8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변경	소로	1	더	10	국지	50	등촌동 511-15	등촌동 511-5	일반		
신설	소로	2	머	8	국지	93	등촌동 523-37	등촌동 523-7	일반		입체적 결정
폐지	소로	3	바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폐지	소로	3	거	6	-	-	-	-	-	건설부 제1968-8호 (1968.01.23.)	

※ 향후 모아타운 외 등촌로39길(소로3-가)변 개발 시 간선도로인 '등촌로' 진출입로 확폭할 수 있도록 계획 유도함

※ 강서도서관앞 도로(소로2-너)를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Ⅱ-1구역 사업시행 시 확보토록 함

※ ()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폭원 및 연장임

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소로3-가	소로3-가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6m → 6~10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다	소로3-다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6m → 6~8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라	소로3-라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6m → 8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자	소로2-자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4m → 8~15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2-차	소로1-차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8m → 10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3-너	소로2-너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4m → 8~11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
소로2-더	소로1-더	- 노선번호 부여 - 폭원변경 (B=8m → 10m)	-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- 진입부 확보를 위한 도로폭원 확폭
-	소로2-머	신설	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
소로3-바	-	폐지	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
소로3-거	-	폐지	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

■ 입체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시설명	위치	구분	규모		비고
					당초	변경	
신설	소로 2-머	일반 도로	등촌동 523-7	길이	-	93m	*도시계획시설 - 도로(일반도로) : 771.3㎡
				폭	-	8m	
				높이 (해발고도)	-	지표면 -1.2m~지상부	*비도시계획시설 -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- 입체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로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소로 2-며	도시계획시설(도로) 입체결정	도시계획시설(도로) 입체결정으로 기존의 통행흐름을 유지하며, 지하공간을 공유하여 지하주차장 신설

■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학교	학교 (도서관)	등촌동 520-6	33,058.0 (3,541.0)	감)104.5	32,953.5 (3,436.5)	-	강서도서관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- 학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-	학교 (도서관)	면적감소 (A=3,541.0㎡ → 3,436.5㎡, 감 104.5㎡)	등촌1재건축구역~등촌로47길~등촌로까지 도로의 연속성을 위한 도로 확폭 필요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통사항)

구분			설치기준	비고
등촌동 515-44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(I)	1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세대당 2.5㎡ X 1.25 이상 설치	구역내
	2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	구역내
	3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	구역내
	4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	구역내
등촌동 520-3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(II)	1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	구역내
	2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	구역내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마. 교통처리 계획(안)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통사항)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고
차량진출입 불허구간	등촌로 39길	- 근린생활가로(등촌로 39길)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	
차량진출입구간	등촌로	- 간선도로인 등촌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 입구 설치	
입체결정도로	등촌로 39나길	- 도로 폐도 부분은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통행흐름 유지 (기존 일방통행 유지)	
보행자전용도로	등촌로 39마길	- 모아주택 1구역 내 봉재산 돌레길 진입부 구간 보행자전용도로 지정	
공공보행통로	등촌로 39길	- 모아타운 I - 모아주택1,2 / 모아타운 II - 모아주택1,2 구역 내 도로 폐도 부분을 공공보행통로 및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보행편의 확보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바.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사.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(안)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통사항)

구 분		면적(㎡)	사업계획					비고
			토지등소 유자	기존 호수	시행자	추진 단계	최초 결정일	
합 계		87,667.9	-	582	-	-	-	
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9,851.3	-	125	조합 (예정)	조합 설립 추진중	-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4,534.2	-	104			-	
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9,627.8	-	106			-	
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7,341.7	-	56			-	

구 분		면적(㎡)	사업계획					비고
			토지등소유자	기존호수	시행자	추진단계	최초결정일	
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II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0,345.7	-	65			-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5,967.2	-	126			-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아. 기타(건축협정)에 관한 계획(안)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통사항)

구 분		위치	면적(㎡)	특례사항	특례적용사유	비고
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I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3일대	19,851.3	공통사항 -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- 건축법 제53조 지하층,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 통합설치	공통사항 -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-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	-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7-39일대	14,534.2			
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44일대	19,627.8			
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4-10일대	7,341.7			
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II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0-3일대	10,345.7		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2-11일대	15,967.2		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자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(안)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통사항)

사업구역	용도지역	건폐율(%)	비고
등촌동 515-44(Ⅰ) 및 520-3(Ⅱ)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제1종일반주거지역 (자연경관지구)	60% (50%)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」
	제2종일반주거지역	60%	
	제3종일반주거지역	50%	

○ 용적률에 관한 계획

구분		위치	용적률(%)		비고
도면 표시	사업구역		기준	상한	
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3일대	200	250	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·공급 (제1종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) - 동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% 이상 건설·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7-39일대	200	250	
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44일대	200	250	
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4-10일대	200	250	
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 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0-3일대	200	250	

구분		위치	용적률(%)		비고
도면 표시	사업구역		기준	상한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2-11일대	200	250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※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(높이, 밀도 등)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

○ 높이에 관한 계획

구분		위치	계획 내용	비고
도면 표시	사업구역			
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3일대	- 최고 20층 이하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7-39일대	- 최고 20층 이하	
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44일대	- 최고 15층 이하 (평균 13층 이하,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)	
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4-10일대	- 최고 20층 이하	
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0-3일대	- 최고 20층 이하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2-11일대	- 최고 20층 이하	

※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(높이, 밀도 등)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

※ 향후 자연경관지구 관련 법령 변경 사항(밀도, 높이 등)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

카.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통사항)

구분		위치	전체세대수	임대주택 세대수	임대주택 인수예정자	비고
도면 표시	사업구역					
합 계		-	2,143	457		
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I) (소규모주택정비관 리지역)	소 계		1,477	313		
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3일대	465	99	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7-39일대	357	92		
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5-44일대	438	77		
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14-10일대	217	45		
	소 계		666	144		
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II) (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0-3일대	259	76	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등촌동 522-11일대	407	68		
	소 계		666	144		

※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

※ 상기의 세대수,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타.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

○ 모아타운 I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65,498.6	-	65,498.6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50,008.3	감) 50,008.3	-	-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5,490.3	증) 4,030.4	19,520.7	29.8	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45,977.9	45,977.9	70.2	
제3종일반주거지역	-	-	-	-	

과.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

○ 모아타운 II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64,171.6	-	64,171.6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50,847.1	감) 18,143.8	32,703.3	51.0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0,991.2	감) 10,100.2	891.0	1.4	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28,244.0	28,244.0	44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2,333.3	-	2,333.3	3.6	

하.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

○ 모아타운 I, 모아타운 II (공동사항)

구분			면적(㎡)	계획내용	계획사유	비고
도면 표시	사업구역					
특별 건축 구역	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 (Ⅰ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9,851.3	-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	-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-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 장 확대 설치	-
	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4,534.2			
		사업가능3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9,627.8			
		사업가능4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7,341.7			
	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 (Ⅱ) (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)	사업가능1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0,345.7			

구분		면적(㎡)	계획내용	계획사유	비고
도면 표시	사업구역				
	사업가능2구역 (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)	15,967.2		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3. 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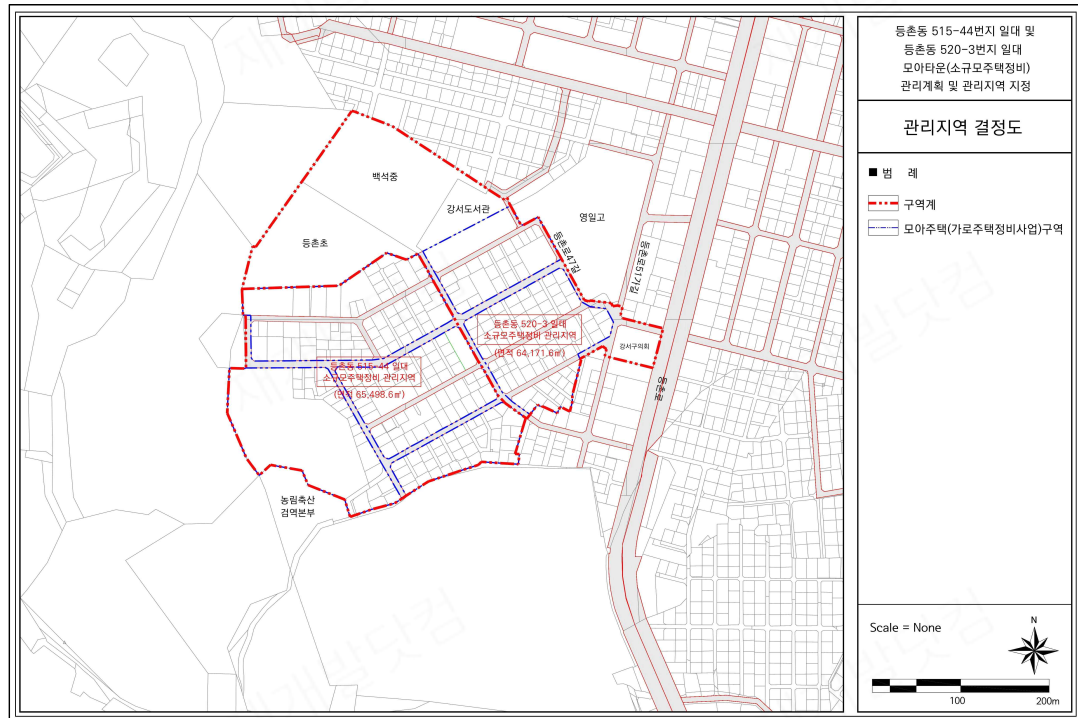
-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4. 관계도서

-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(☎ 02-2133-8235)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(☎ 02-2600-6845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-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
-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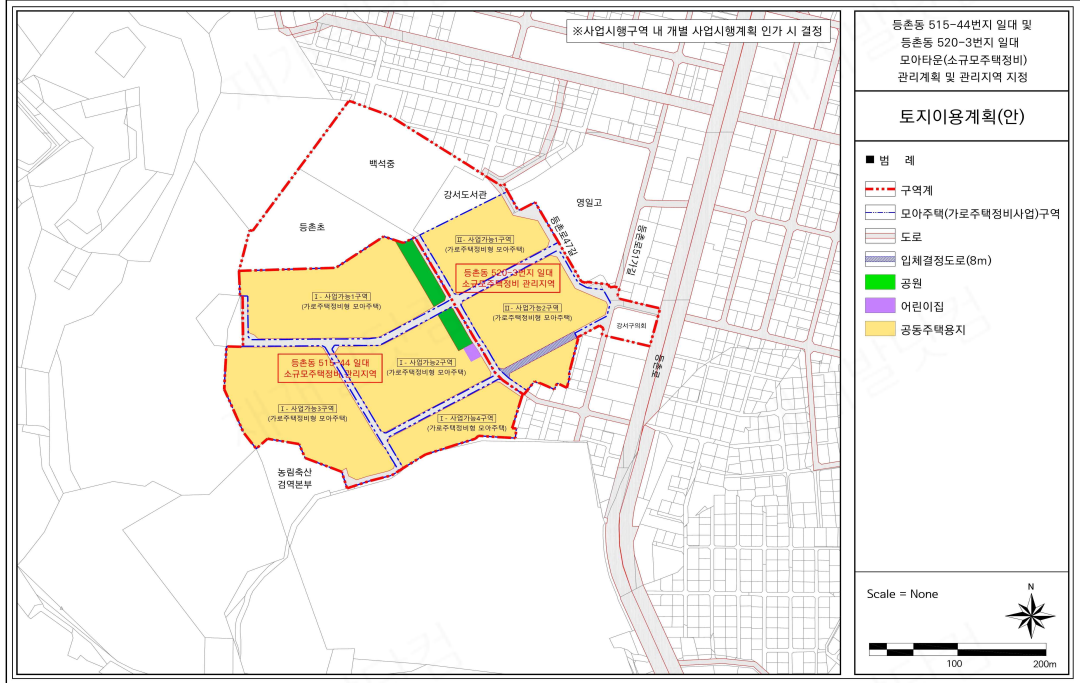
3. 종합계획(안)

○ 관리지역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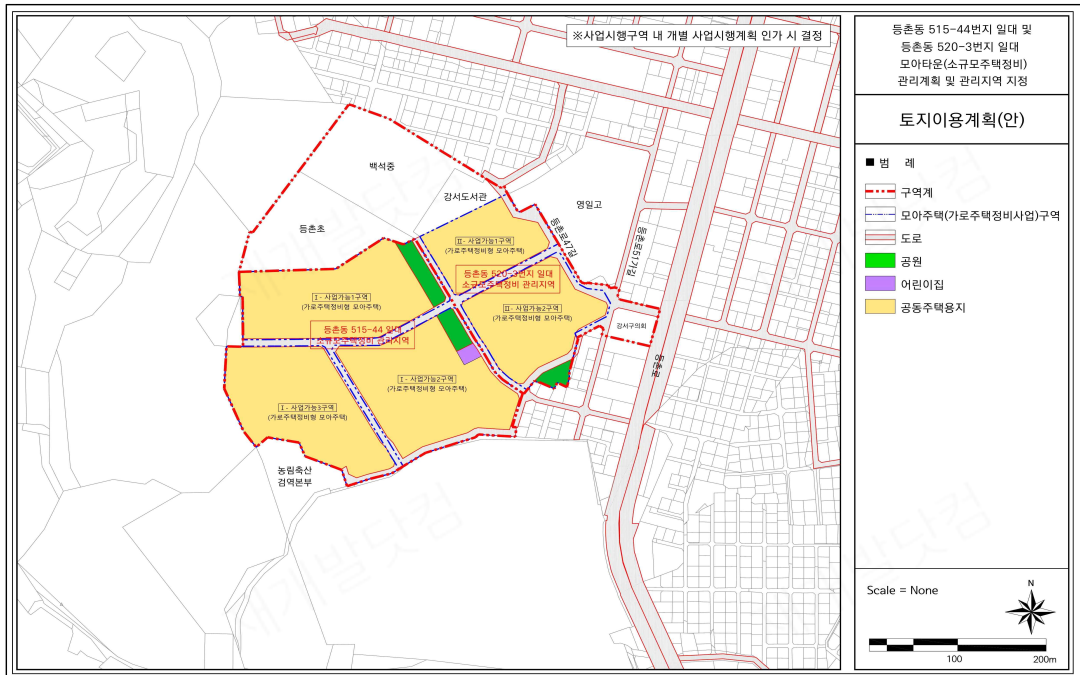


- 이하여백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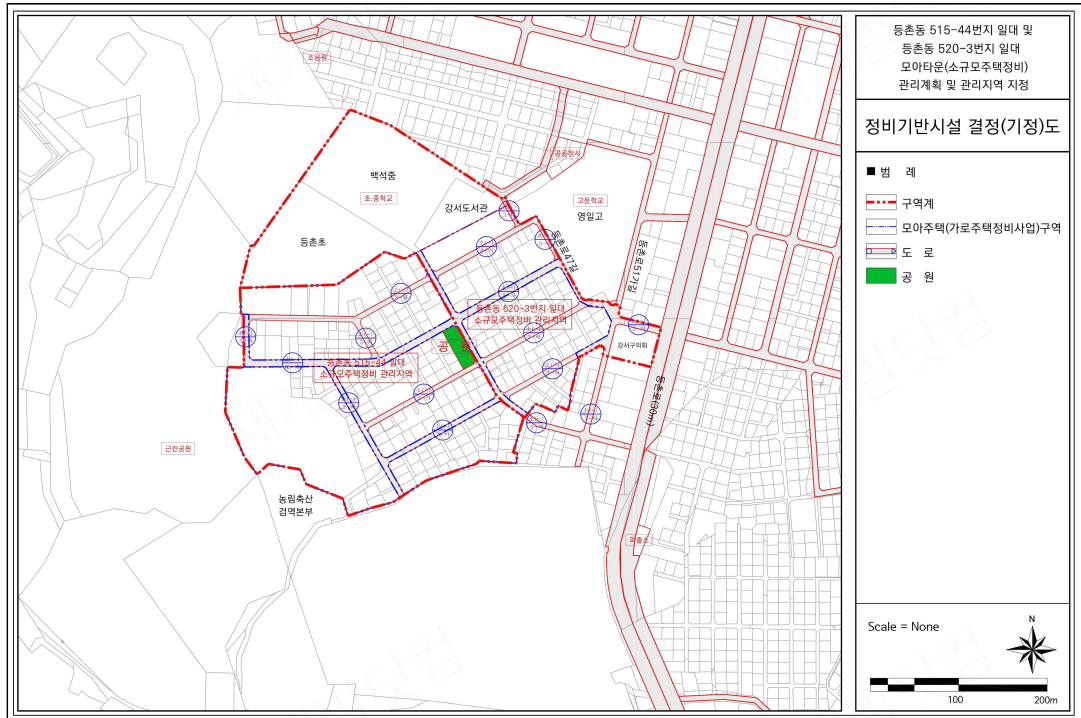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이용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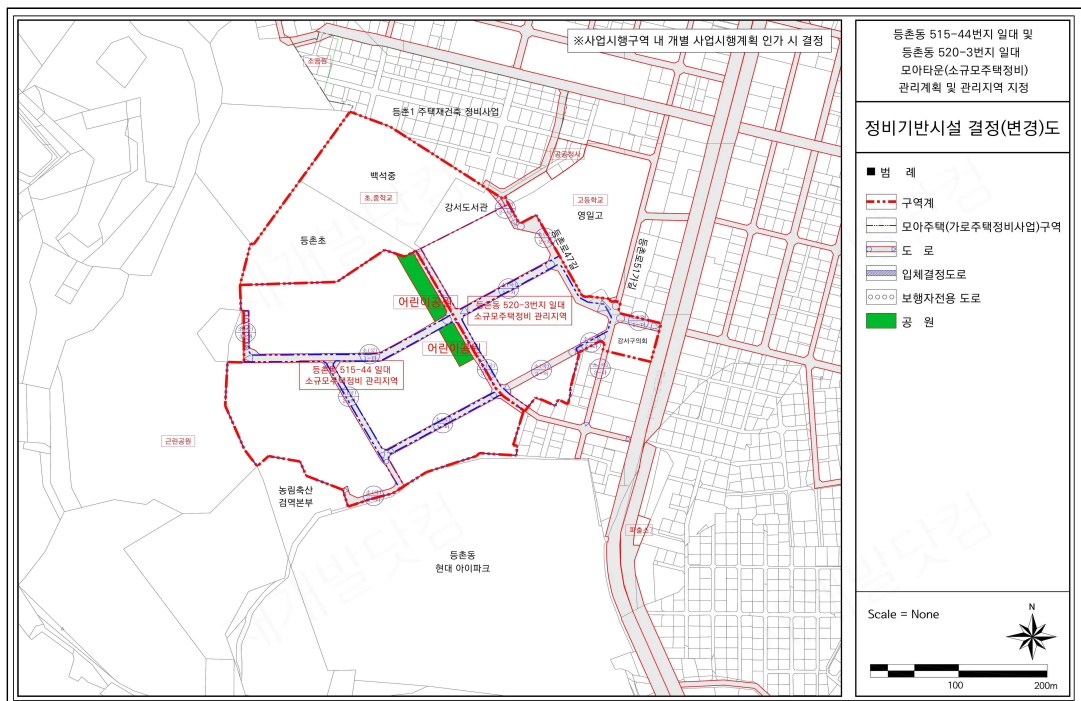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이용계획(예시도)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 반영 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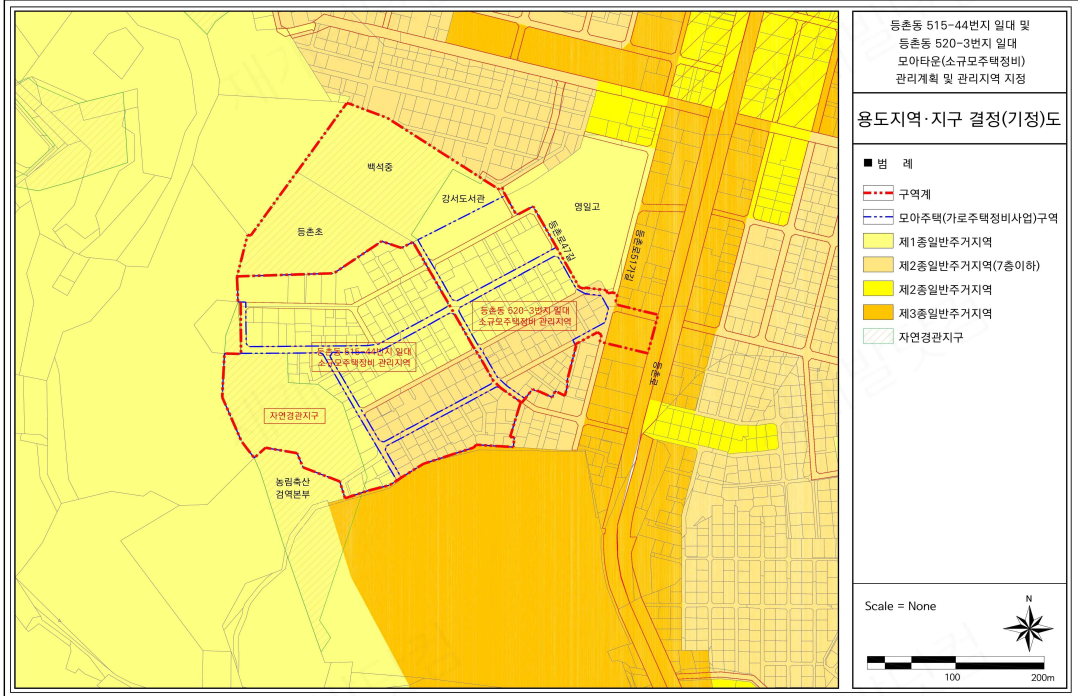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기반시설(도로)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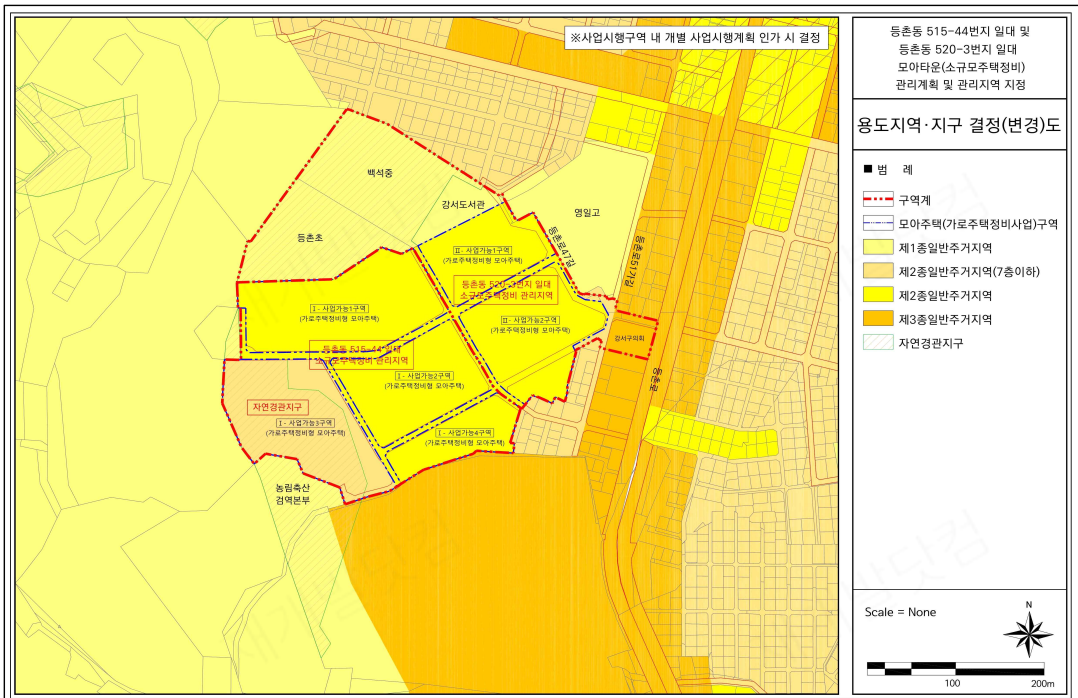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기반시설(도로)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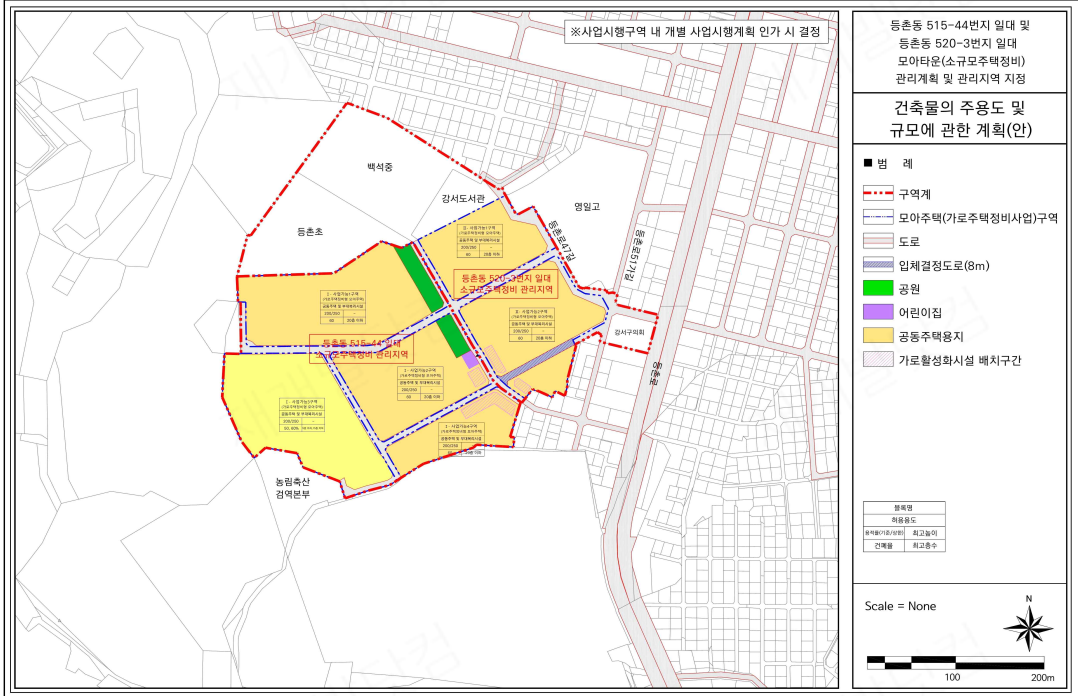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 결정(기정)도

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

○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안)



○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안)

